

No. 25

행정 명령

특정 법 조항 정지 유지

2011년 8월 25일에 발급한 행정 명령 No. 17에서 뉴욕주 Bronx, Kings, New York, Queens, Richmond, Nassau, Suffolk 카운티 및 인접지역에 대한 재해 긴급사태 선포를 했으므로; 그리고

2011년 9월 15일에 주 재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위하여 행정 명령 No. 17을 개정한 행정 명령 No. 22를 발행하였고, 이는 다음의 추가의 카운티 영토 경계 내에서 2011년 9월 12일부터 유효합니다: Albany, Broome, Chenango, Chemung, Clinton, Columbia, Delaware, Dutchess, Essex, Greene, Herkimer, Montgomery, Oneida, Orange, Otsego, Putnam, Rensselaer, Rockland, Saratoga, Schenectady, Schoharie, Sullivan, Tioga, Ulster, Warren, Washington 및 Westchester; 그리고

행정법 2-B조항 섹션 29-a에 의해, 특정 조항이 재해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막거나, 방해하거나, 지연시킨다면, 해당 법규, 지방법, 조례, 명령, 규칙이나 규정, 또는 그것의 일부를 정지, 변경 및 수정할 권한을 주므로; 그리고

2011년 9월 1일에 고속도로법, 경제 개발법, 주 재정법, 환경 보존법 및 뉴욕 규칙 및 규정법의 특정 조항을 정지시키고, 재해 비상에 훼손되거나 파괴된 주 시설의 복구 및 재건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행정 명령 No. 19를 발행하였으므로; 그리고

2011년 9월 2일에 행정 명령 No. 20을 발행하여 뉴욕 규칙 및 규정법의 특정 조항을 정지시켜 Schoharie 카운티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주거 프로그램을 허락하여 노숙자 여성 및 아동들에게 비상 쉼터를 제공하였으므로; 그리고

행정법 섹션 29-a에 따르면 법 조항 정지는 30일 이상 될 수 없으나, 주어진 상황 및 연관된 모든 사실들을 고려하여, 정지기간이 30일 추가로 연장될 것이므로;

이제, 그러므로, 나, ANDREW M. CUOMO 뉴욕 주지사는, 행정법 2-B조항 섹션 29-a에 의해 내게 확립된 권한에 따라, 그리고 주어진 상황 및 연관된 모든 사실들을 고려한 후, 이로써 행정 명령 No. 19에 의해 명령되었던 법 조항의 정지가 2011년 10월 30일까지 유지될 것과, 행정 명령 No. 20에 의해 명령되었던 법 조항의 정지는 2011년 10월 31일까지 유지될 것을 명령합니다.

이천십일년 구월 이십구일 Albany시에서 내게

주어진 권한 및 주 인증의 권한에

의함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실장